삼정 KPMG



목 차

Secti	on I. Law & Regulation	. 2
1.	2022 회계연도 상장법인 감사보고서 분석 및 시사점	. 2
2.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규정변경예고 실시	. 2
3.	사고 예방을 위한 은행권 내부통제 점검결과	.3
4.	회계부정신고 포상금 지급현황 및 제도 운영방향	.4
5.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과 지정 감사인의 산업전문성 기준 등을 마련	. 4
6.	「2023년도 K-IFRS 제·개정 내용 설명회」개최	. 7
7.	2022 년도 회계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 공개	.8
Secti	on II. Articles	10
1.	삼정 KPMG, 2023 Audit Committee Outlook	10
2.	삼정 KPMG, 2023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조직 서베이 리포트	10
3.	삼정 KPMG,「韓美 내부회계관리제도 비교와 시사점」Vol.5	11
Secti	on III. Q&A	12
1.	내부회계관리규정 문구 수정에 따른 감사 및 이사회 결의 필요 여부 문의	12
2.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년도 문의	12
3.	제·개정된 내부회계관리규정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승인과 이사회 결의 관련 문의	13
News	s & Events.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주요 교육행사 소개	15
1.	[감사위원회포럼] 감사 및 감사위원을 위한 2023년 제4회 정기 포럼	15
2.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무과정 교육 (온라인)	16

Section I. Law & Regulation

1. 2022 회계연도 상장법인 감사보고서 분석 및 시사점 (금융감독원, 2023.9.8)

(1) 상장법인 감사보고서 분석 결과

- 상장법인 2,511사의 FY22 감사보고서 적정비율은 97.9%였으며, 新 외감법 시행이후 점진적인 개선 추세를 보임
 - $-97.2\%(FY19) \rightarrow 97.0\%(FY20) \rightarrow 97.2\%(FY21) \rightarrow 97.9\%(FY22)$
- 코로나19 관련 강조사항이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전기 대비 △85.3%), 합병 등 영업환경·지배구조 변화에 대한 강조사항은 증가함(전기 대비 14건 증가, ▲17.9%)
- 적정의견 법인(2,458사) 중 계속기업 불확실성을 기재한 상장법인은 85사로 전기(92 사) 대비 감소함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비적정의견 비율이 전기 대비 2.8배 증가 4사(FY21) → 38사(FY22)

(2) 시사점

- 비적정의견 회사 수는 FY20 이후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새로운 회계제도가 안 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71사(FY20) → 68사(FY21) → 53사(FY22)
- 전기 재무제표 수정은 48건으로, 재무제표 수정내역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임

▲ Back to Top

2.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규정변경예고 실시('23.9.22. ~ 10.4.) (금융위원 회, 2023.9.21)

(1) 외부감사규정 개정안 내용

가. 거래소(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에 지정감사인의 부당행위에 따른 분쟁 조정업무를 수행하는 '자율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운영함

나. 거래소(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를 통해 자산 1천억 원 미만 소규모 상장사의 가치평가 용역 수행을 지원함

다. 재무제표 심사 및 회계감리 등 회계감독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의 제도개선을

추진함

- ① 회계부정 위험이 높은 지정감사 회사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착수 근거 등을 명확화
- ② 재무제표 심사 대상 기업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 근거를 신설
- ③ 회사와 감사인에 대한 외부감사법상 과징금 부과방식의 적정성을 제고

(2) 시행 시기

• 앞서 입법예고한「외부감사법 시행령」개정안의 시행 시기('24.1.1)에 맞춰 같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진행할 계획임

▲ Back to Top

3. 사고 예방을 위한 은행권 내부통제 점검결과 (금융감독원, 2023.10.13)

(1) 은행권 내부통제 점검 개요

- 은행권은 지난 8월 금융감독원의 요청에 따라 금융 사고예방 대책 및 내부통제 전반에 관한 자체점검을 실시함
 - ① 내부통제 혁신방안 이행상황
 - ② 부동산 PF 자금관리에서의 사고징후 여부
 - ③ 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전반의 적정성
- 1개월간에 걸친 점검결과, 추가 사고징후은 없었으나, 내부통제 실제 운영상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발견되어 이에 대한 개선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할 예정임

(2) 향후 계획

- 금융감독원은 내부통제가 보다 실효성 있게 작동될 때까지 강도 높은 감독 활동을 지속할 방침임
 - ① 혁신방안 중 일부 과제(장기근무직원 관리비율, 준법감시부서 인력확대, 전산시스템 통제 강화, 자금인출 시스템 검증 강화)의 이행 시기 단축 및 순환근무 예외직원에 대한 별도의 사고예방 통제장치 마련
 - ② PF대출 업무 부문에서 직무분리, 사후관리 등 내부통제절차가 적정하게 작동되고 있는 지에 대해서도 추가로 자체 점검하도록 하고, 보완 필요사항 등 신속 개선 조치 지도
 - ③ 은행별 개선계획의 이행여부 확인 및 점검 등 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전반의 적정성 제고 추진

▲ Back to Top

4. 회계부정신고 포상금 지급현황 및 제도 운영방향 (금융감독원, 2023.10.25)

(1) 회계부정신고 포상금 지급현황

- 회계부정신고 포상금 제도와 관련하여, '23년 중 회계부정 적발에 기여한 신고 5건에 대해 총 2억 1,34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됨
- '22년 중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상장법인 등의 회계부정행위 신고는 총 115건(전년 대비 25.0% 증가)인 가운데, 회계부정신고에 따라 회계심사·감리에 착수한 회사는 '17년부터 '22년까지 총 25사임

(2) 포상금 제도 운영방향

가. 포상금 지급대상 회계부정신고 범위 확대

• 경고 또는 주의 조치도 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시키고, 익명 신고도 포상금 지급 가능

나. 포상금 지급금액 증액 및 산출방식 간소화

• 최고 포상금 지급액을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증액하고, 기여도 산정 시 자의적 또는 정성적 요소를 최소화하며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세부 산정항목을 조정·단순화

다. 내부신고자에 대한 조치시 면제 또는 감경 근거 마련

• 지시를 받아 회계부정에 관여한 신고자도 일정 요건 충족한 경우에는 조치를 면제 또는 감경 받을 수 있는 근거 법령 마련

▲ Back to Top

5.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과 지정 감사인의 산업전문성 기준 등을 마련 (금융감독원, 2023.11.15)

(1)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보고 기준 마련 ('24.1.1. 시행)

가. 기존 모범규준을 준거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자율규정으로 운영하던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을 규정화하고, 주 요 용어, 서식 등을 정비

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 주요 내용

- 회사의 대표이사(내부회계관리자)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평가해야 함
- 회사의 대표이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후 미비점에 대한 평가 및 조치 후 운영실태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이사회·감사(위원회)에 보고해야 함
- 회사의 감사(위원회)는 독립성에 기반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에 담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미비점이나 취약점을 시정시켜야함

다. 기타개선사항

- 핵심통제, 통제위험, 통제실패위험 등 주요 용어 정의·정비
- 평가 대상 사업단위 명료하게 규정

라. 운영실태·평가보고서 서식 정비

- 중요 취약점 관련 시정조치 계획에 감리 관련 시정조치 계획 포함
- 중요 취약점 관련 통제 미비점의 원인 및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정보, 횡령 등 자금관련 부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회사가 수행한 내부통제 활동 등을 추가하며 구체적 양식 제시

< 운영실태 평가보고서 서식 정비(예) >

구분"	회사가 수행한 통제활동*2	평가 대상 여부* ³	테스트 수행 내역*4 (수행부서, 수행 시기 등)
자금 관련 부정위험 평가 관련 (부정에 대한 유인과 압력, 실행 기회,	(예) 부정위험 발생가능성이 높은 부서에 대해 유인 과압력으로 인한 위험평가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가 내부 감사계획서에 포함 되었는지 확인함		
합리화에 대한 평가 등)			
자금통제 (입출금 계좌관리, 입출	(예) 자금팀 담당자로부터 계좌해지 리스트를 수령 하여 적절한 승인권자의 승인여부를 확인함		
금 관리 등)	(예) 특정일자의 자금일보 및 자금집행 리스트를 징 구하여 적절한 상위권자의 승인을 득하였는지 확인 함		
자금통제 (기타 - 재고자산, 법인	(예) 법인카드 등록, 해지, 한도변경 품의서를 확인 하여 적절한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았는지 확인함		
카드, 금융상품, IT통제 등 관련			
기타			

[〈]출처〉금융감독원. 2023년도 K-IFRS 제·개정 내용 설명회 자료, pp. 76~77. (2024년 1월 1일 시행)

마. 시행시기

- '24.1.1부터 시행
- 단, 1년간은 현행 준거기준인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모범규준에 따른 평가 및 보고 수행 가능

^{*1.} 자금횡령 방지를 위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업무 체크포인트(2022년 12월,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에서 제시한 자금통제의 항목 구분을 예시로 사용하였으며, 회사의 규모 등 상황에 따라 회사의 통제활동을 적절하게 구분할 수 있다.

^{*2.} 회사가 설계한 핵심통제활동에 대해서 기술

^{*3.}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효과성 평가 대상으로 선정하였는지 여부 표기

^{*4.} 해당 통제에 대한 효과성 테스트 수행 내역을 기술

(2) 상장사 지정 감사인의 산업전문성 기준 마련

- 금융업·수주산업 등 11개 산업을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를 기준으로 산업전문성이 필요한 산업으로 지정
- 해당 산업의 상장회사는 지정 감사인의 전문성을 요구할 수 있고, 지정기초자료 신고서에 산업전문성 필요 여부를 기재해야 함
- 지정 감사인은 산업전문가의 분류기준에 따라 감사팀 내 산업전문가 1명 이상을 포함해 야 함
- 회계법인의 산업전문인력 확보 기간 등을 고려하여 산업 분류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 예정

산업 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제10차 기준)	시행시기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소분류 201(기초화학물질제조업), 192(석유정제품제조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 조업	• 중분류 21(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 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 대분류 D(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 절 공급업)	
건설업 등 수주산업	 대분류 F(건설업), 소분류 311(선박 및 보트건조업), 312(철도장비제조업), 313(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제조업) 	'24년 1월 1일부터 적용
운수 및 창고업	• 대분류 H(운수 및 창고업)	'25년 1월 1일부터 적용
통신, 엔터테인먼트, 방송 업	중분류 59(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60(방송업), 62 컴퓨터프로 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소분류 612(전기통신업), 631(자료 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소프트웨어개발업	• 소분류 582(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업)	
은행 및 저축 은행업	• 소분류 641(은행 및 저축기관)	'24년 1월 1일부터 적용
보험업	• 소분류 651(보험업), 652(재보험업)	
자본시장 등 기타금융업	• 소분류 642(신탁업 및 집합투자업), 661(금융 지원 서비스업), 649(기타금 융업)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대분류 M 중 중분류 71(전문서비스 업) 제외 · ·중분류 중 73(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은 제외하나 소분류 739(그외 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는 포함	'25년 1월 1일부터 적용

(3) 외부감사규정 개정사항 적용을 위한 서식 개정

- 수치 산정 재무제표가 연결에서 별도로 변경됨에 따라 지정기초자료 신고서를 별도재무제 표 기준으로 작성하도록 개정함
- 변경된 경력기간별 점수를 지정기초자료 신고서의 서식에 반영함

(4)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요건 점검보고서 개정

• 점검보고서에 대표이사 서명란 등을 추가하고, 사후심리 점검방법을 보완함

(5) 외감규정 시행세칙 개정안 사전예고

• 개정안은 '23.11.15.~12.5.까지 사전예고를 실시하고, 이후 연내 시행을 목표로 함

▲ Back to Top

6. 「2023년도 K-IFRS 제·개정 내용 설명회」개최 (금융감독원, 2023,11,22)

(1) 2023년도 K-IFRS 제·개정 내용 설명회 개요

- 일 시: '23.12.1.(금) 오후 2시 ~ 4시 30분
- 장 소: 금융감독원 2층 대강당
- 참 석 자: 기업 회계실무자, 외부감사인 및 이해관계자(투자자) 등
- 주 최: 금융감독원,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 참가신청: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금융감독원 등을 통해 사전 선착순 접수

(2) 주요 내용

가. '24년부터 시행되는 기준서 주요 개정내용

• '24년부터 시행되는 기준서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하고, 국제회계기준(IFRS) 제·개정 관련 주요 동향을 안내

나.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의 집행사례

• 기후 관련 위험 공시, 금융자산의 재분류 등 주요 사례 안내

다. '23년 질의회신 사례

• 관계기업에 종속기업, 사업부 처분 시 회계처리 등에 관한 질의회신 사례를 소개

라.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지침 등 주요 내용 소개

• 「내부회계 평가·보고 지침」('24.1.1. 시행 예정)과 '연결 내부회계 종속회사 범위 결정 가이드라인(안)' 관련 주요 내용을 소개

마.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FAQ

• '23년부터 외부감사가 시행된 자산 총액 기준 2조원 이상 상장회사의 연결 내부회계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를 안내

바. 외부감사인 선임 및 지정제도

•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23.6월) 등에 따른 외부감사인 선임·지정제도의 주요 변경사항 및 유의사항을 안내

▲ Back to Top

7. 2022년도 회계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 공개 (금융감독원, 2023.11.27)

(1) 22년도 회계감사·감리 주요 지적사례 공개

- 금융감독원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의 적용을 돕기 위하여 대표적인 감리지적 사례를 공개하고 있음
- '22년도 공개한 지적사례는 18건으로 매출 허위.과대계상 등 매출.매출원가 관련 사례가 3건이며, 투자주식 평가 오류 4건, 재고자산 및 유형자산 과대(허위) 계상 3건, 이연법인 세부채 과소계상 2건 등으로 구성

(2) 이용 방법 및 향후 계획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의 ""업무자료-회계-회계감리-심사·감리지적사례" 메뉴에서 자료 검 색이 가능함
- 유관기관(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을 통해 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를 배포하고, 회계현안설명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교육·안내할 예정임

	<이연법인세 회계처리 오류 등 재무제표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례>							
	공개 시기	'23.11월	'22.6월	'21.12월	'21.6월	'20.8월	'19.12월	합계
	공개 대상 연도	'22년	'21년	'11년~ '14년	'20년	'15년~ '17년	'18년~ '19년	'11년~ '22년
	●매출·매출원가	3	4	4	5	12	4	32
지	② 투자주식	4	3	4	5	6	4	26
· 적 유	③재고 및 유·무형 자산	3	3	_	1	5	7	19
형	❹ 기타자산 · 부채	5	2	8	2	5	7	29
	⑤ 주석미기재 등	3	3	11	2	9	7	35
	공개사례 수(합계)	18	15	27	15	37	29	141

Section II. Articles

※ 제목 및 이미지 클릭 시, 원본 자료 다운로드 가능

1. 삼정KPMG. 2023 Audit Committee Outlook



- 「KPMG ACI 2023 Audit Committee Outlook」은 KOSPI 200 기업의 감사위원회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음
- 자본시장법 개정 영향 및 이사회 내 다양성을 추구하는 세계적 인 추세에 따라 국내 여성 감사위원의 수가 크게 증가함
- 감사위원 또는 감사가 교육을 이수하는 것이 의무사항 수준으로 자리매김하였음 ('23년 94.5%, 전년 대비 2.0%p 증가)
- 감사위원회 안건 TOP 4(외부감사인, 내부회계관리제도, 내부 감사, 재무감독)의 변화는 크지 않았지만 'ESG 경영' 관련 안 건이 등장함에 따라 향후 ESG 경영 안건을 다루는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2. 삼정KPMG, 2023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조직 서베이 리포트



- ICFR 평가 조직의 외부전문가 활용 등의 영향으로 조사 기업 중 ICFR 평가 조직을 보유한 기업이 전년 대비 9%p 감소한 65%로 확인됨
- ICFR 평가 조직 최고책임자가 내부감사실장이나 감사(위원장) 인 기업 비중은 2022년 3%에 이어 2023년 4%에 불과했음
- 연결ICFR 운영상 가장 큰 애로점은 '내부회계 전문인력 부족 및 종속기업의 낮은 인식 수준'으로 확인됨
- 감사(위원회)의 ICFR 감독 지원조직이 ICFR 평가 조직과 동 일한 경우(57%)와 내부회계관리조직 또는 회계·재무 조직으로 운영되는 경우(22%)에는 감사(위원회)의 ICFR 감독 지원조직 의 독립성 보장에 한계가 있음

3. 삼정KPMG, 「韓美 내부회계관리제도 비교와 시사점」Vol.5



- 한국과 미국 공통적으로 비적정의견 기업의 비중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2022년에 한국과 미국 모두 내부통제 영역에서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중요한 취약점은 '회계 인력 및 전문성 부족'이며, 미국에서 가장 높은 비중(22.3%)을 차지한 '정보기술(IT) 통 제 미흡'이 한국에서 2022년 최초로 중요한 취약점으로 지적됨
- 최근 3년간 내부통제의 중요한 취약점 중 '자금 통제 미비' 비중은 한국이 미국에 비해 10배 이상 높은 수준임
- 한국의 경우 ICFR 비적정의견에 대해 외부감사인과 감사(위원회) 및 경영진 간 의견이 불일치하는 비율이 80%를 상회하는 반면, 미국은 0%임
- 최근 한국은 ICFR 감사대상 확대 기조 속에서 중소기업의 회계부담 합리화를 위한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 Back to Top

Section III. Q&A

본 섹션의 내용은 참고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삼정KPMG는 이에 대한 완전성 및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사결정 등에 필요 시 반드시 유권 기관의 해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1. 내부회계관리규정 문구 수정에 따른 감사 및 이사회 결의 필요 여부 문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2023.11.02)

Q.

- 당사는 내부회계관리규정 부칙 중 제2조에서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시행시기를 2024년 1월 1일로 규정하고 있음
- 외감법 개정으로 2조 원 미만인 상장사의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이 2024년에 서 2029년으로 유예됨에 따라, 2조 미만인 상장사에 해당되는 당사는 상기 부칙을 수정하고자 함
- 상기 부칙 수정 시 이사회의 결의가 필수인지, 단순히 이사회 보고서에 기표만 해도 되는 것인지 문의함

Α.

• 문의 내용은 법률에 의한 단순 자구 수정 및 용어 변경이 아니며, 회사의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적용 시기와 관련된 중요한 변경 사항에 해당되므로 감 사위원회 승인 및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됨

2.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년도 문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2023.8.16)

Q.

- 당사는 '22년 말 기준 자산 총액이 2조 미만이지만 올해인 '23년 말 자산총계가 2 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됨
- 당사가 입법 예고된 외감법 시행령에 따라 자산 2조 원 미만의 상장회사에 대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시기를 2029년까지로 유예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함

Α

- '23년말 자산총액이 2조 원을 넘는다면,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24년부터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것이 원칙임
- 다만, '23년말 기준 자산총액이 2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이 연결 내부회 계관리제도 도입 유예 신청 대상인지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의 확인이 필요함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97호]

제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략)

마.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시기 조정 (대통령령 제29269호 부칙 제3조) 자산 2조 원 미만 상장회사에 대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시기를 5년 유예 ('24년→'29년)

(후략)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3.08.14.]

제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23.8.16. ~ 9.25.)

(중략)

첫째, 자산 2조 원 미만 상장회사에 대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시기를 '24년에서 '29년으로 5년 유예한다.

다만,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계획대로 금년부터 도입하되, 예외적으로 금융감독원에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유예를 신청한 기업에 한해 심사를 거쳐 2년간 유예를 허용한다.

유예를 원하는 기업은 외부감사인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신청기간 내(9.1~9.8일) 금융감독원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에 심사를 신청(별도 신청서식 작성)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유예 악용 방지를 위해 심사기준*을 충족한 기업에 대해서만 증권선물위원회 의결('23.11월 잠정)을 거쳐 2년간의 유예(12월 결산법인의 경우 '24년 말까지)를 허용하고, 유예기업에 대해서는 유예사실과 유예사유 등을 사업보고서에 공시토록 할 방침이다.

(후략)

3. 제·개정된 내부회계관리규정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승인과 이사회 결의 관련 문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2023,7.11)

Q.

-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서 발간한 『감사위원 및 감사를 위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업무체크포인트(2021-12)』의 내부회계관리규정 18쪽에 "제·개정된 내부회계관리규정은 감사(위원회)의 승인과 이사회 결의를 득하였는가?" 라는 항목이 존재함
- 상기 항목이 상법 제415조의2 제6항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협회의 의견을 질의함

Α.

• 회사는 상법의 특별법인 외부감사법을 우선 적용하고, 해당이 없다면 상법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따라서, 회사는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에 따라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제정하 거나 개정할 때는 감사위원회의 승인 및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함

[관련 법령]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

③ 회사는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감사의 승인 및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감사와 이사회는 승인 또는 결의의 이유 등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상법 제393조의2(이사회내 위원회)

④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를 통지 받은 각 이사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

상법 제415조의2(감사위원회)

⑥ 감사위원회에 대하여는 제393조의2제4항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 Back to Top

News & Events.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주요 교육행사 소개

1. [감사위원회포럼] 감사 및 감사위원을 위한 2023년 제4회 정기 포럼

| 행사 개요 |

• 일 시: 2023년 11월 21일 (화) 07:30 ~ 09:30

• **장 소**: 서울 웨스틴 조선 호텔 오키드룸(2F)

| 행사 내용 |

시간	내용	연사		
07:10~07:30	참가자 등록			
07:30~08:00	조찬			
08:00~08:10	환영사	김정각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08:10~08:45	[주제 1] 감사위원회가 알아야 할 개정 법규 및 24년 정기주총 체크포인트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現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위원		
08:45~08:55	휴식			
08:55~09:30	[주제 2] 결산시점 재무보고 및 외부감사 감독 방안	지동현 삼정KPMG 전무(partner)		

| 홈페이지 |

• 감사위원회포럼 https://www.acforum.or.kr/

| 안내 사항 |

• 추후 행사 녹화 영상이 감사위원회 홈페이지에 업로드 될 예정

2.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무과정 교육 (온라인)

| 과정 개요 |

- **일 시**: 2023년 9월 26일 ~ 2025년 12월 31일 (기간 내 자유수강)
- 장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홈페이지 ('행사·설명회' → '신청내역 조회' 메뉴)
- 참가대상: 회원사 임직원 등 (비회원사 수강 불가)
- **참가비**: 무료
- 신청기한: 2025.12.31.

| 교육 내용|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무과정 커리큘럼

- 1. ICFR Regulation_상
- 2. ICFR Regulation_하
- 3. ICFR 감사방법론
- 4. 위험평가
- 5. 범위선정
- 6. 통제활동_상
- 7. 통제활동_하
- 8. 변화관리와 설계평가
- 9. 운영평가 상
- 10. 운영평가_중

- 11. 운영평가_하
- 12. 모니터링 및 보고
- 13. 연결 ICFR 구축 및 운영_상
- 14. 연결 ICFR 구축 및 운영 하
- 15. 정보기술일반통제_상
- 16. 정보기술일반통제_하
- 17. 자동통제_상
- 18. 자동통제_하
- 19. Post ICFR 운영방안 상

| 안내 사항 |

- PPT 자료는 제공되지 않음
- 참가 신청 및 영상 수강이 모두 완료된 후 참가확인증 출력이 가능

│ 문의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기업회계팀 (02-2087-7191~4)

▲ Back to Top